

제331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4 호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2월24일(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심사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

(09시44분 개의)

○소위원장 신성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종 차관님 나와 계신데 정부가 협회 측하고 합의해서 마련한 합의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정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017년 2월 이전에 통합한다.

둘째,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KOC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법안소위 부대의견으로 한다.

이 딱 두 가지로 결정 났습니다.

오늘 김정행 회장님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서상기 전임 회장, 사무총장도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방금 김종 차관이 설명한 안에 대해서 체육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KOC 하면 KOC하고 대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KOC는 대한체육회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체육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대한올림픽위원회 KOC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올림픽위원회’ 해도 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명칭이 KOC를 지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지금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합의사항이 맞아요, 틀려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신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덧붙여서 그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님, 맞습니까?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조영호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 안에 대해서. 법안의 조문화 가능한 부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 이정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KOC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지금 통합 시행일을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 2월 1일 이전으로 통합 시기를 정했지만 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통합 시기를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 2월 이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지금 합의대로 해 주면 안 되느냐고요?

○전문위원 이정화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침에 차관님 말씀이 2017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통합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통합 시기를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소위원장 신성범 공포가 언제 됩니까?

○전문위원 이정화 공포를 보통 우리가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보내면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한 5월 정도가 통합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후 1년……

○소위원장 신성범 시간은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흥근 위원 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시기를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 2월로 어쨌든 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정부 쪽 의견과 양쪽 단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내년도 그 시점 정도면, 그러니까 경과조치를 한 1년 정도 두고 나면 충분히 통합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합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기 부분이.

○소위원장 신성범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조문 정리를 해 보세요,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전문위원 이정화 그러면 이 통합 시기를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대략 내년 한 5월 정도에 통합 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문제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정화 그러면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그다음에 소위의 부대의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정화 부대의견은, 이 법안의 부대의견에는 그렇고요.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실 때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심사결과에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는 넣지 않고요, 경과보고서에……

○소위원장 신성범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이정화 예.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토론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김태년 위원 국생체 의견 있으면……

○소위원장 신성범 할 말이 계세요?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조영호 국민생활체육회 입장에서는 법 통과된 후로부터 2017년 2월 1일이 됐든, 1년 후가 됐든 여기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시행을? 아니, 그러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확인할게요. 총장님, 공포 후 1년 후라고 하면 내년 5월쯤이 되는 건데요, 생체가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조영호 예, 차질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5월에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조영호 단 대한체육회 입장이……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생체는 문제없다는 거고요?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조영호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체육회는요?

○대한체육회장 김정행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됐네요.

○전문위원 이정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생활체육진흥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합을 전제로 했지만 구체적 법문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내년 한 5월경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통합시기가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두는 그 조항은 유효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시킨 생활체육진흥법의 유효기간을, 생활체육회를 설립한다는 7조를 관련 몇개 규정은 내년 5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통합체육회가 설립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조항들은 다 살아 있는 거고요.

○**김태년 위원** 그것은 조문 정리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정화** 예, 조문 정리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徐相箕 議員** 다시 한 말씀 조금만……

○**소위원장 신성범** 예.

○**徐相箕 議員** 그 기간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지금 조문이 사라질 판인데…… 총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신성범** 아니, 서 의원님은 계시고, 지금 무슨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에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 거예요?

○**국민생활체육회사무총장 조영호** 혹시 1년 후로 하면 준비기간이 늦을까 봐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데 원래 처음에는 2017년 2월 1일이었지만 입법하는 과정에서 1년 후라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종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이 중 훈

○**청가 위원(1인)**

배 재 정

○**위원 아닌 출석 위원(1인)**

서 상 기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재	룡
전 문 위 원	박	기	영
전 문 위 원	이	정	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차 관	김		종
체 육 정 책 관	우	상	일
대 한 체 육 회 장	김	정	행
국 민 생 활 체 육 회 장	조	영	호
사 무 총 장			

○**출석 위원(9인)**

김 태 년	김 회 선	박 혜 자	박 흥 근
신 성 범	윤 관 석	이 상 일	이에리사